

# 2024년도 보상지침(분묘보상액, 이사비, 주거이전비)

‘24. 3. 21.(목) 보상과

## 1 분묘에 대한 보상액

### ○ 근거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8조, 제54조 내지 제5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 ○ 보상기준

- (유연분묘)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무연분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분묘 이전비, 잡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
-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

### < 유연 및 무연분묘 보상금 산정기준 >

-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4m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은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아장은 단장 분묘이전비의 40%만 지급, 3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90% 가산, 4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120% 가산, 5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140% 가산, 6합장 이상은 각각의 비용의 1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② **잡비** : 분묘이전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이전보조비** : 100만원
- ④ **석물이전비** : 물건으로 감정평가 후 보상

- (납골분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하여 분묘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

\* 납골분묘는 토지에 유골함을 매장한 경우에 한하여 본 지침 단가를 적용하며, 집단 가족 납골당 형태의 경우는 납골당 시설과 유골함을 포함하여 별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

**< 납골분묘 보상금 산정기준 >**

- ① (분묘이전비) 보통인부 5인, 광목 2마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및 운구차량비
- ② (잡비) 분묘이전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이전보조비) 100만원
- ④ (석물이전비) 물건으로 감정평가 후 보상

○ 2024년도 분묘보상금 산정금액

(단위 : 원)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비고
유연분묘	단장	4,122,000	2,401,000	721,000	1,000,000	
	합장	5,369,000	3,361,000	1,008,000	1,000,000	
	아장	2,623,000	1,248,000	375,000	1,000,000	
	3합장	6,369,000	4,130,000	1,239,000	1,000,000	
	4합장	7,118,000	4,706,000	1,412,000	1,000,000	
	5합장	7,617,000	5,090,000	1,527,000	1,000,000	
	6합장 이상	7,868,000	5,283,000	1,585,000	1,000,000	
무연분묘	단장	1,508,000	1,160,090	348,000	-	
	합장	2,132,000	1,640,130	492,000	-	
	아장	759,000	584,000	175,000	-	
납골분묘	단장	3,451,000	1,885,225	566,000	1,000,000	회장 후 유골함을 매장한 분묘
	합장	4,337,000	2,567,838	770,000	1,000,000	

\*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토지정책과-4593호, 2011.09.25.)에 따라 통계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금액으로 보상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

## 2 이사비

###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2항 및 [별표4]

### ○ 보상기준

-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 < 이사비 산정기준 [별표4] >

주택연면적기준	이 사 비		
	노 임	차량운임	포 장 비
33㎡ 미만	3인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 × 0.15
33㎡ 이상 49.5㎡ 미만	4인분	2대분	"
49.5㎡ 이상 66㎡ 미만	5인분	2.5대분	"
66㎡ 이상 99㎡ 미만	6인분	3대분	"
99㎡ 이상	8인분	4대분	"

\* (노임)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조사주기 : 매년 1.1, 9.1 기준 2회 발표)

\*\* (차량운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 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조사주기 : 연간)

### ○ 산정금액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계(단가)	노 임	차량운임	포장비
33㎡미만	<b>826,430</b>	496,635	222,000	107,795
33㎡이상49.5㎡미만	<b>1,272,107</b>	662,180	444,000	165,927
49.5㎡이상66㎡미만	<b>1,590,134</b>	827,725	555,000	207,409
66㎡이상99㎡미만	<b>1,908,161</b>	993,270	666,000	248,891
99㎡이상	<b>2,544,214</b>	1,324,360	888,000	331,854

\* (노 임) **165,545원/인** (2024. 1. 1. 기준)

\*\* (차량운임) 222,000원/대 (2022. 기준)

### ③ 주거이전비

####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 보상기준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세입자에게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 <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

- ① (1인~4인)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② (5인)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③ (6인이상)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 산정금액

가구원수	가계지출비(월평균)	소유자(2월분)	세입자(4월분)
1인	2,557,203	5,114,406	10,228,812
2인	3,990,099	7,980,198	15,960,396
3인	5,174,867	10,349,734	20,699,468
4인	6,604,809	13,209,618	26,419,236
5인	7,402,205	14,804,410	29,608,820

※ 6인이상일 경우 1인 평균단가 1,137,368원 [(7,402,205원 - 3,990,099원) ÷ 3]